

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효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1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3일

발 의 자: 이효원, 강석주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남궁역, 남창진, 박강산,
윤종복, 이봉준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전병주,
정준호, 황철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놀이기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출입 및 주·정차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 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위의 제한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(안 제5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‘자동차, 오토바이 등’을 ‘자동차, 오토바이, 개인형 이동장치 등’으로 한다.

3. 자동차, 오토바이,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·정차 행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행위위 제한) 1. ~ 2. (생 략) 3. <u>자동차,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</u> 주·정차 행위 4. ~ 7. (생 략)	제5조(행위의 제한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자동차, 오토바이, 개인형 이동</u> <u>장치 등</u> ----- 4. ~ 7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제3호의 내용을 추가(자동차, 오토바이 등 → 자동차, 오토바이, 개인형 이동장치 등)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